●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242호

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」을 공고 합니다.

> 2022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
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규정변경예고

1. 개정이유

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져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·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합리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

2. 주요 내용

가.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

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시 80%로 축소 반영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(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11.0,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100분의 14.0)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,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13.0,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100분의 15.5로 설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원회

- 전자우편(이메일): seungri12@korea.kr

- 팩스 : 02-2100-293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(전화 02-2100-29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